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민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7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5.

발 의 자 : 김민전 · 이인선 · 조정태
신성범 · 인요한 · 백종현
곽규택 · 유용원 · 김기웅
조배숙 · 박수영 · 김미애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선거가 종료된 후 선거사무의 전반적 내용, 주요 통계,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·점검과 향후 대책 등을 정리한 선거백서의 작성·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.
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후 해당 선거에 관한 선거총람을 발간하여 국회 등에 배부하고 있으나, 선거사무 추진 경과 및 주요 통계가 주요 내용이어서 선거백서로 보기에 어려움.

선거백서의 작성 및 공개를 통하여 국민과 국회가 선거사무에 관심을 갖고 선거 관련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보완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이에, 선거사무 추진 경과 및 주요 통계 이외에도 선거인 또는 후보자의 이의신청 접수·처리 결과, 투표 및 개표 관련 제기된 주요 쟁점

사항 및 조치 내용, 선거사무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는 선거백서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선거백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80조 신설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0조(선거백서)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 일 후 1년까지 해당 선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거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선거사무 일정 및 추진 경과
2. 선거 관련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 사항(발생일, 개요, 기소여부 및 재판 결과를 포함한다)
3. 선거인 또는 후보자의 이의신청 접수·처리 결과
4. 투표 및 개표 관련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 및 조치 내용
5. 선거사무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대책
6. 선거쟁송 및 결과
7. 선거사무 제도개선 건의사항
8. 투·개표사무 담당자(투표관리관, 사전투표관리관, 투표사무원, 사전투표사무원, 개표사무원, 그 밖에 투·개표사무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말한다)의 위법행위 및 부적절한 사무집행 행위
9.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

-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백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,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백서를 작성하고 공개한 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 중 새롭게 추가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6개월마다 선거백서를 다시 개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.
- ④ 선거백서의 작성·공개·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거백서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80조(선거백서)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 후 1년까지 해당 선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거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u> <u>1. 선거사무 일정 및 추진 경과</u> <u>2. 선거 관련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 사항(발생일, 개요, 기소 여부 및 재판 결과를 포함한다)</u> <u>3. 선거인 또는 후보자의 이의 신청 접수·처리 결과</u> <u>4. 투표 및 개표 관련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 및 조치 내용</u> <u>5. 선거사무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대책</u> <u>6. 선거쟁송 및 결과</u> <u>7. 선거사무 제도개선 건의사항</u> <u>8. 투·개표사무 담당자(투표관리관, 사전투표관리관, 투표사무원, 사전투표사무원, 개표사무원, 그 밖에 투·개표사무</u>

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말한다)의 위법행위 및 부적절한 사무집행 행위

9.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

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백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,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백서를 작성하고 공개한 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 중 새롭게 추가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6개월마다 선거백서를 다시 개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.

④ 선거백서의 작성·공개·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